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
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보훈부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·재산이
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7(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)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(이하 “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”라 한다)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8조의7(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·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u>
1. ~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